第279回國會
(臨時會)

#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月7日(水)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제도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제안 및 의결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채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입법예고제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입법예고의 매체를 국회공보뿐만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여 입법예고가 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을 실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입법예고 매체를 현재의 국회공보뿐만 아니라 국회방송 또는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이 입법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입법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제도가 그 기능적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비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 선임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각 부처에 대한 결산과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혹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 결산 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며,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②항)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동의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우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 규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의 겸임만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겸직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다수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윤리적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의원을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의 개정취지에 운영위원들께서 공감하시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그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적인 제도가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법률안의 발의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권한이 국회나 교섭단체 또는 다수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79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다수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입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정치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발의 시의 정수요건은 심각한 입법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안 제출 등 의안의 발의에 있어 정수요건을 삭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린 개정안에서는 현행 국회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요건 중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현직 대학 교수들이 대거 출마를 하면서 학기 중 휴직을 하거나 수업을 휴강하여 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학문을 실제로 접목시킨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갑작스러운 휴직으로 인한 대학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수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재당선될 때마다 8년, 12년씩 장기간 휴직하고 해당 대학은 휴직한 교수의 전공수업을 시간 강사로 장기간 대체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 활동 대학 교수의 휴직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해 규정된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임기 개시일에 해직되도록 하고 기존에 휴직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개정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구성에서부터 의사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국회 의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비교섭단체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구성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엄연히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국회법으로 인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의 "20인 이상으로"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입니다. 소수자의 대표인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의 국회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으로까지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섭단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교섭단체의 규정이 없고, 독일은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입니다. 프랑스·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의석 수를 비교할 때 우리의 현행법보다는 완화되어 있으며, 기타 서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섭단체의 완화기준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회의도 교섭단체 완화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에 권고하였던 바 있고, 지난 제6대에부터 제8대의 국회에서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아무런 합리적 기준 없이 기존 정당의 기득권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밀실운영'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정책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출현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인 국회운영과 정확한 민의반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제안하는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기준을 '15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직제를 반영하여 각 상임위에 고루 분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요구하는 한편, 현행 국회법보다 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개정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국회,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법안 수가 점차 증가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법안이 속출하는 등 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제도개선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대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설 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입니다.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운영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 등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새로운 정책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정리·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부 등이 서류 등을 제출하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지나치게 길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적시성 있는 안건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적시성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보고, 서류의 제출 또는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8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야말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과제이며, 이는 중앙과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체로서 지방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자율·자족 체제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 신장과 정부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상호연계·보완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행정·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칭되고 있는 현행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며 광역경제권 구축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 지방자치 신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뒷받침하고, 헌법 제123조제2항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률안 등은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과제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가 절실하며, 본 법안은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 제123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60~70년대에 성장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우선 경쟁력을 갖춘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개발하였는데, 이것이 1만 불, 2만 불 국민소득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과밀화로 인한 혼잡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집적이익의 감소와 비효율의 급증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인적자원·자본의 유출로 인한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잠재력을 통한 자생력 발휘의 여건 마련이 지체되는 등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격차는 일단 발생하면 자기영속적인 경향이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해소방안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경제중심지로의 집적이 강화되어 주변부 지역경제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려는 제한적 규모의 정책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집적지역이 누리는 집적의 초과이윤을 넘어서는 정도의 강력한 유인책을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의 투자집중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반면, 지방투자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의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토관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공정경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구조는 지방투자를 증대시킬 때 추가 형성의 탄력을 받기 때문에 지방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방의 역량제고 및 육성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적인 특별위원회로서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안이 조속한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1)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적인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46조의4 제1항)

(2)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소관으로 합니다.(안 제46조의4 제2항)

※참고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일반 상임위원회의 예에 준합니다.(안 제46조의4 제3항 및 제4항)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또는 금융정책에 관한 감독 등 국가경제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 인사 청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화성갑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 소관기관의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결산과 관련된 소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시 첨부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선심성 예산증액 등의 잘못된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세출 예산 항목을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예·결산 심사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안 제84조의2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가하게 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삭감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4조의5항)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동의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입법·정책활동은 상호 존중 하에 이성적인 토론과 논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회의장 점거와 과격한 몸싸움, 소란 등은 국회의 존재의의를 퇴색시키고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만 안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의회의 경우, 회의장 질서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사규칙은 본회의장을 입법 및 의원총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회 의사규칙의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위반 행위와 제재 수단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의장이 해당자에게 주의·견책·일시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는 의원의 의장석 점거, 본회의장 봉쇄와 같은 무력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출입하거나 무단점거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 등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의 의회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만 본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위반한 사용이나 무단점거의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자에게 국회의 의결 없이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본회의장에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뜻을 살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0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 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 제출 요구는 현재까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에 제2항을 신설해 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에서 정부·행정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 제출 요구를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그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유는

정부 및 행정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당해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여 다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 제출 요구를 국회법에 신설하면서 이와 연관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해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 의원이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서류 제출은 거부할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班)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도 종합적 포괄적이며 행정부로 조직에 대한 감독권이 보장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 제출 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 요구의 범위도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이에 본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도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적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등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되, 서류 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고·서류 제출 요건 중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 의원 86인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혐의를 구실로 부당하게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기 중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여야 하는바, 현행법에는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표결권 행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의 진상, 증거유무, 체포·구금의 합법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위한 아무런 판단자료 없이 찬반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표결 결과에 대한 불신과 표결권의 자의적 행사 등 문제점을 시정하여 표결 결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명확한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4대부터 17대 국회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총 29건 중 7건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입법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법안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이전에 해당 의원의 체포·구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헌법적 권한이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에 국회의 규제신설 억제노력이 합쳐져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합니다.

현행 입법절차상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코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편법·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신설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 규제존속기한을 설정 및 '규제영향분석 전문조직'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출신 권택기 의원입니다.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경제적 부담 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 심의 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안 준비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법률안의 실현가능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여 법률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국회의 규제입법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의 또는 제안·제출된 의안에 대한 별도의 추계서를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

둘째,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합니다.(안 제79조의3 신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정감사 시기가 정기국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15일 정도에 불

과하여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30일 이내에서 연중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더욱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들께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는 개원초기부터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헌정마비 사태가 초래된 바 있고, 현재 특정정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안건상정 자체를 방해해 전체 국회의사 일정에 영향을 끼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이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관련규정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원은 법에 의한 절차없이 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회의원총선거일 현재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의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당해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또한 법사위에 회부된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법률안은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갑습니다. 김성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화하여 안건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하는 상설소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설소위원회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폐회 중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회 중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상설소위원회의 수를 5개 이내로 하며

둘째,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검토·심의하신 후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시어 상설소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법 제5조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제18대 국회가 무려 82일만에 개원식을 가진 데 이어,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감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한 '부실국감'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첫째,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 공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불참하는 경우,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수당·여비를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 구성은 각 정당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국회 공전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정위원회위원장·금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행정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의원이 본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윤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 종류에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출신 민주당 최철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2008년 정부조직 개

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동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지식경제부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나 돼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사용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7조는 타 부처 소관 기금사업을 심의하여 계획안을 조정·의결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 부처소관 기금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계획안 심의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심도 있는 계획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운용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나, 지식경제부 이외의 부처에서 사용하는 기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업무보고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없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임하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 부처 소관기금 사업을 심사하는데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권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1963년 권위주의 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킴.

그후 45년 동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적자재정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국회의 예산권능의 회복, 권력분립 원칙의 확립,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강화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세출을 철저히 심의하여 국가재정 건전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됐음.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37조제1항제3호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특임장관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으나, 정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국민과 외국 정치인·외교관 등이 무엇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17대 국회까지는 금융분야가 이원화 되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를 소관으로 하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맡았고, 금융정책 집행과 금융기관 감독 등의 업무만이 정무위원회 소관이었음.

그러나 제18대 국회에서는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금융분야는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단일화 되었기에 정무위원회 명칭에 '금융'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

이에 위원회의 직무가 쉽게 인식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방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는 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정보확보 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 여부 등도 그 대상이 되고, 일반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그 합법성 내지 타당성을 감사·조사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행정집행의 적법성·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진행 중인 수사의 속행·소추의 간섭 혹은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의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등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혹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사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라는 개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언론중재 관련 결정사례와 법원 판례가 다수 형성되어 있어 법 해석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여야 같은 위원수로 하고

둘째,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며

넷째,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정감사 시기가 정기국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30일 이내에서 연중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더욱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출신 진

수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 안에 과다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로 부실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299명이 20일 동안 447개 피감기관 감사하게 되어 하루에 2~3개 기관을 중복 감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4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감감사방법으로는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의원 1인당 하루 15분 내외에 불과한 감사시간으로 단편적인 질문·중복질문과 더불어 의미 없고 성의 없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 이로 인해 피감기관들 감사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특이한 제도로 해외 선진국에서의 국정감사는 의회와 위원회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이자 상시적 국감체제이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정감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판단하시어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을 출신 구본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중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만이 위증이나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 등의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한화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거짓진술로 밝혀졌으나 국회에서 증인선서하지 않고 한 발언이라 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선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며, '선서'라는 형식적 요건을 기회삼아 법망을 빠져 나가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위증 또는 감정인의 허위감정을 처벌하는 기존의 법 규정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 공무원 등 보고의무자가 국회에 출석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어도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었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권

위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8명이 제출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요구로 제출되는 문서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미미하여 이 법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여 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을 가능하게 하며, 국회의 고발건에 대하여는 검찰의 처분 사유와 결과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님들!

매년 국정조사 때마다 반복되어 일어나는 자료부실과 증인 출석요구 거부를 방지하고 국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갑 장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정부 등에 요구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개인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 내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4조제1항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법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법안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및 해태하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및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 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의 구성과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소지를 없애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인사청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자료 요구, 수집, 정리 등의 실무 작업을 뒷받침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2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만 존속하는 인사청문회가 이 모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인사청문회의 운영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의 실무작업을 보조할 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인사청문 보조기관을 설치하여 인사청문회의 사전조사활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려 기간에 쫓겨 부실한 인사검증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안 제6조와 제9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의 제안취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국회의원 보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의원의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에 대해서 라인조직의 지원개념인 '보조직원'에서 스탭조직의 지원개념인 '보좌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보좌직원'을 두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비례대표 정하균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지난 17대에 2명, 18대 들어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장애인 의원이 등원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의원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를 가진 의원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이외에 전문적인 보조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인력의 지원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사무총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문계약직 보조직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에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의원에게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2명 이내의 보조직원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의원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었던 지난 6월, 국회는 국회법상으로 규정된 임시회를 열지 못하고 법정기일보다 82일이나 지난 8월 말이 되어서야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들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6월 세비 부당수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국회 개원지연으로 인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의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2항을 신설,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가 집회되지 않는 경우 그 날이 경과된 날부터 집회된 전 날까지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리로 인해 구금이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이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입법 활동 등 주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비록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되기는 하지만 직무가 사실상 중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 수당을 제외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별도의 견제기구가 없는 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님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하고 일 잘 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들께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반은 경우에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각종 정책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3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의 종류가 종이 중심의 인쇄물에서 전자책(e-book)같은 전자자료의 형식이 갈수록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납본은 간행물 및 간행물의 내용이 담긴 디스켓으로만 할 수 있어서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및 전자자료를 명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봉사의 일환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에만 할 수 있던 것을 회기, 비회기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료의 수집 대상으로 간행물의 전자파일 및 전자자료를 추가하였고(안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 대상으로 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

자료·전자자료를 추가하였으며(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시차제 근무를 회기, 비회기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본 개정안을 통해서 납본의 불편함을 없애고,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본 의원이 규제와 관련한 법을 발의할 경우 의원입법일지라도 규제심사보고서를 첨부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를 국회 내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규제영향분석 전문조직'을 국회예산정책처 내에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본문에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명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국가의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원활한 규제영향분석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출신 권택기 의원입니다.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률안 등에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첨부된 경우에도 객관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법률안 등 의안 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규제영향분석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28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업무를 여성부로부터 이관받은 이후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희롱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을 해석하면서 성희롱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에서 성희롱 행위를 삭제하고, 성희롱 정의규정에 후문을 신설하여 성희롱 행위 그 자체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됨을 명확

히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제4호, 제5호)

최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성희롱과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법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조항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을 마련하여 성희롱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보와 국회 소속기관 정책분석 업무의 종합적 공보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총장의 공모제 도입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國會圖書館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장의 전문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국회도서관장 공모제의 도입에 필요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공모제 도입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